



[연재 일정 안내]

2009. 1월호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목적
2009. 2월호	중국의 전리제도
2009. 3월호	중국의 상표제도
2009. 4월호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2009. 5월호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동향
2009. 6월호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분석

* 상기 연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특허나라(www.patentmap.or.kr)에서 전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분석

주요판례 심층 분석 – 사례

가. 판결 요지

사건번호	(2005)民三提字第1号	판결일자	2005. 8. 22.
원고	대련인달신형장체 (大连仁达新型墙)건재창	피고	대련신의건재 (大连新益建材)유한공사
원고대리인	북경시립방(立方) 율사사무소	피고대리인	대련지혜(智慧) 전리사무소
전리종류	발명	전리번호	ZL98231113.3
1심승패	원고 승소	전리법조항	전리법 제56조
소송결과	피고 승소	법원/주심	최고인민법원/王永昌

나. 주요 쟁점

다여지정원칙이 침해소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지 여부 및 균등론의 판단기준이 “각 요소의 비교방법”에 의거하는지 여부

다. 사실 관계

원고 인달창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왕모씨로부터 콘크리트 박벽통체 부재에 관한 독점적 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후 실용신안권의 기재와 구성요소의 일부가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신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및 2심 판결에서 인달창이 승소했다. 피고(신청인) 신익공사는 2심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라. 소송 경과

본 사안에 있어서 실용신안권과 본건 제품은 ① “통체부”와 “통저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② 실용신안권의 통체부에는 2개층의 유리섬유포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본건 제품은 1개층의 유리섬유포를 적용하고 있고, ③ 실용신안권의 통저부에는 유리섬유포가 적용되어 있는데 반해, 본건 제품의 통저부에는 유리섬유포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대련시 중급인민법원)은 ① “통저부”는 “통체부”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라는 전제하에, ② 통저부에 있어서 유리섬유포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본건 제품의 차이점을 주목하기보다는, 양 기술 모두 통체부에 유리섬유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여기서 유리섬유포가 1개층인지 2개층인지 여부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신익공사는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고, 2심 법원(요녕성 고급인민법원) 역시 위와 같은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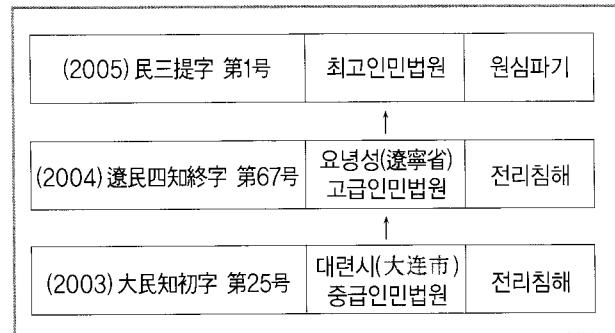
마. 상소심 판결요지

원심 판결은 “통저부가 통체부의 부차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통저부의 쟁구조가 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된 이상 “다여지정원칙”을 경솔하게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 기술의 통저부 구조는 유리 섬유포를 포함하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고, 권리요구서와 설명의 기재된 한정조건을 감안할 때, 통체부 역시 유리 섬유포가 2개인지 1개인지 여부의 차이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균등 침해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바. History map



사. 결론 및 시사점

침해판정에 있어 “다여지정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최초로 다여지정원칙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다여지정원칙의 적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여지정원칙이 어떻게 운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판결은 균등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전체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대신에 “각 요소를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균등론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므로, 청구범위의 작성에는 이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명특허 2009. 6